

요 약

- 정부는 지난 4월 24일 과거 35년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를 산정하는데 사용했던 표준품셈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예산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.
- 정부에서 품셈의 정확성 부족을 이유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적 개념의 잘못된 해석 및 현행 제도 미비 등으로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시킬 우려가 큼.
- 현행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임. 또한 프로젝트의 특성, 투입물량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노무량 및 장비투입량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자는 표준품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.
- 특히 표준품셈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가격(Price)보다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투입 노무량의 정확성에 있음. 이것이 틀렸다고 누차 지적되지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실측 데이터가 현재까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형편임.
- 현행 공공공사 표준품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.
- 조달청의 경우,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에 의해 만들어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상하 2% 내에서 15개의 가격을 만들고 이중 4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후 이를 예정가격으로 산정함. 그러나 이는 공급자의 생산가격이 아니라 수요자의 추정가격임.
- 건설업체는 적격심사제 및 부대입찰제 등에 따라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야 함. 즉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에 따라 건설업체의 입찰가격이 결정되고 낙찰금액이 결정되지만, 이는 실제공사비와 무관하고 건설업체의 실행예산과도 무관함.
- 실적공사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.
- 건설공사의 총 공사비는 설계변경, 물가변동 및 계약변경 등으로 대부분 변경되므로 시설물별·공종별로 준공정산 후의 가격에 대한 시공단위당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 도입
- 재정적으로 독립된 일본의 물가조사회, 경제조사회, 미국의 'RS Means', 영국의 'Spon' 등과 같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시장거래가격 등을 조사함으로써 발주기관의 표준품셈 작성이나 예정가격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표준품셈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, 준공가격의 도입과 현행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내년부터의 부분적인 시행조차도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음.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선행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